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박기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882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5일

발 의 자 : 박기재, 강대호, 권수정,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인제,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화숙,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양민규,  
오중석, 유정희, 이광성,  
이광호, 이상훈, 이영실,  
이준형, 이태성, 임종국,  
장상기,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조상호, 최 선,  
최웅식, 홍성룡, 황규복  
의원(45명)

##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수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통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향후 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 확대, 서울형 복지모델 개발 및 역할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 간 제1호 관련 협력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